

부동산가압류취소결정에 의한 등기부기입촉탁신청

사 건 2000카단 000 가압류취소

신 청 인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신청인은 2015. 6. 4. 귀원 20○○카단 ○○○호로 "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"에 대한 가압류명령(20○○카단 ○○○)의 취소결정을 받았는바, 위 가압류취소결정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.



첨 부 서 류

1. 가압류취소결정 1통

1.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

1.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납부필증 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제출법원	집행법원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93조
제출부수	·부수 신청서 1부(별지목록 5부정도 첨부)		
비 용	・송달료: 2회분(우표로 납부) ・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: 등록면허세 필지당 6,000원(지방세법 제 28조제1항제1호마목),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(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) ・등기신청수수료: ○○○원(□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)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